

#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8,509,543	11,355,286
일반회계	334,175,794	10,025,274
특별회계	44,333,749	1,330,012
공기업특별회계	10,432,581	312,97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432,581	312,977
기타특별회계	33,901,168	1,017,035
수질개선 특별회계	16,599,234	497,977
주택사업 특별회계	4,385,725	131,572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29,281	21,878
자활기금 특별회계	1,882,558	56,477
산업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8,244,500	247,33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15,313	27,459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1,243	13,537
기반시설 특별회계	33,084	9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660,230	19,80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37,03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